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8 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허 영·박지혜·이소영

박성준 • 주철현 • 전재수

한민수 · 허종식 · 복기왕

김남희 • 위성곤 • 소병훈

이연희 • 박희승 • 고민정

박민규 • 노종면 • 민형배

정준호 • 박지원 • 한정애

김성회 • 박해철 • 백승아

의원 (2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·운영되고 있음.

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각종 기후 문제가 우리의 일 상은 물론,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임.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 른 청년 고용 및 실업, 주거 등 청년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실정임.

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는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렵고 단기간에

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정해지고,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제외되는 비상설 특 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중·장기적 해결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이 있음.

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 써 중·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 는 것임(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).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5조의2(기후위기특별위원회) 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둔다.
  - 1. 기후변화,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
  - 2. 기후변화,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과 관련된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
  - 3.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
  -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제81조 및 제84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.
  - ③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 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.
  - ④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

-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- ⑥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⑦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 항을 준용한다.
- ⑧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- 제45조의3(청년특별위원회) ① 청년 문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년특별위원회를 둔다.
  - 1. 청년고용, 청년주거, 청년농어업인 및 청년정책 등 청년 문제와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
  - 2. 청년고용, 청년주거, 청년농어업인 및 청년정책 등 청년 문제와 관련된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
  - 3.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
  -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제 81조 및 제84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.
  - ③ 청년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

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.

- ④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청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- ⑥ 청년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⑦ 청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⑧ 청년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5조의2(기후위기특별위원회)
	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
	<u>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</u>
	여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둔다.
	1. 기후변화, 온실가스 배출권
	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
	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
	의 심사
	2. 기후변화, 온실가스 배출권
	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
	위기 대응과 관련된 예산안
	및 결산의 예비심사
	3.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
	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
	<u>건의 심사</u>
	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
	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특별위
	원회를 제81조 및 제84조에 따
	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.
	③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
	수는 18명으로 한다. 이 경우
	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
	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

<u>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</u> <u>선임하거나 개선한다.</u>

- ④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장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 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 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 다.
- ⑥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①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 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 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⑧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운영

  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

<u><신 설></u>

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3(청년특별위원회) ① 청년 문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년 특별위원회를 둔다.

- 1. 청년고용, 청년주거, 청년농 어업인 및 청년정책 등 청년 문제와 관련된 법률안의 심 산
- 2. 청년고용, 청년주거, 청년농 어업인 및 청년정책 등 청년 문제와 관련된 예산안 및 결 산의 예비심사
- 3.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

   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

   건의 심사
-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제81조 및 제84조에 따른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.
- ③ 청년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

하거나 개선한다.

- ④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청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- ⑥ 청년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⑦ 청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 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 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후 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- 8 청년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